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527 발의연월일: 2021. 11. 25

발 의 자 : 임이자 · 구자근 · 권명호

권영세 · 김성원 · 김태흠

김형동 • 박대수 • 조명희

추경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 써 야생생물의 멸종 예방과 생물의 다양성 증진을 통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지속 개정되어 왔으나 국내 생물종의 43.8%, 멸종위기종의 65%가 국립공원 내에 서식하고 있는 만큼 야생동물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사람) 간의 질병 공유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이에 수반되는 질병 연구, 구조·치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 핵심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에 대한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이에 수반되는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등의 권한을 국립공원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

련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가 핵심보호지역 내 야 생동물 질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 대응관리 및 구조·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립공원공단이 재정적 지원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안 제58조).

법률 제 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를 "야생생물을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	제58조(재정 지원)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u>환경부</u>	<u>야생생물을</u>
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	보호・관리하는 기관 또는 환
<u>단체</u> 에 보조할 수 있다.	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u>보호단체</u>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